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등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중 직접경비 정산 근거 마련(제11조)

- 직접경비에 대한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접경비 범위내에서는 세부 비목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적인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마련(별표2)

- 차량운행비 등 직접경비 산출방법과 비목별 세부 정산방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zpdlnql@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